

대법원 2015. 12. 23 선고 2015다235636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---

## 전 문

원고, 상고인

1. 김△년

김해시 ○○○

2. 박▽욱

김해시 ○○○

3. 이■범

고양시 ○○○

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○진

피고, 피상고인 한△▽×공사

나주시 ○○○

대표자 사장 조○익

소송대리인 변호사 문○식, 양시환

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. 8. 27. 선고 2014나2046769 판결

## 주 문

상고를 모두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.

## 이 유

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,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,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2015.12.23.

재판장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고영한 주심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이기택